

대구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0나32295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고, 항소인 C

변 론 종 결 2021. 12. 22.

판 결 선 고 2022. 1. 26.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가소2040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3,933,000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2,967,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관급 조림공사를 낙찰받아 시행하는 회사들이고, 소외 D은 원고들 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9. 3. 초순경 D을 통해 피고에게, 원고 A이 칠곡군으로부터 낙찰받은 3건의 조림공사 및 원고 B이 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2건의 조림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100,0000,000원(= 원고 A 57,000,000원 + 원고 B 43,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9. 4. 20. D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김천 지역의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총 공사대금을 5,000,000원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하도급의 총 공사대금은 10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9. 3. 9.부터 같은 해 5. 14.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총 98,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의 총 공사대금을 105,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에 따른 공사를 지연함으로써 원고들이 발주처로부터 제재처분을 받게 되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의 공사대금의 증액을 철회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들은 위 기초사실 라.항의 98,400,000원 이외에도 2019. 3. 9.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1,5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6,900,000원{= 100,000,000원 - (원고들이 지급한 98,400,000원 + 추가지급액 10,000,000원 - 피고 반환금액 1,500,000원)}의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6,9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1)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하도급의 공사대금 증액(위 1.의 다.항 사실)을 철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 2) 피고는 2019. 3. 9. 원고들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하도급의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2019. 4. 20. 이 사건 하도급의 공사대금을 105,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준공지연으로 인하여, 원고 A이 2019. 5. 10. 칠곡군에 의해 2019. 5. 9.부터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지정된 사실과 피고 B이 2019. 5.경 김천시로부터 658,850원의 지연배상금을 부과받고 2019. 5. 2.부터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지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과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의 총 공사대금은 10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이 2019. 3. 9.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조합 예금통장 거래내역 사본(갑 제3호증의 1)이 있으며, 이에 의하면 2019. 3. 9. 소외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에서 10,000,000원이 제3자에게

이체되었고 그 거래내용으로 ‘C C단장’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돈이 입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2019. 3. 9.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① 피고 명의의 G조합, 우체국, H조합 계좌에는 2019. 3. 9. 10,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도 지급받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 ② 이체자는 계좌이체시 거래내역에 임의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으므로, 위 10,000,000원이 피고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입금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③ 원고들은 2019. 3. 4.경 피고와 같이 I에 위치한 J조합에 방문하여 피고 명의로 J조합 계좌를 발급받아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명의의 K계좌(발행점은 K이고 관리점은 J조합임)는 2019. 3. 15. 발급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④ 이 법원은 2021. 8. 30.자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원고들에게 입금된 상대 계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였다. 위 자료는 원고가 소송절차 이외의 방법으로도 용이하게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들은 위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3회의 변론기일이 진행¹⁾ 되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소결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의 총 공사대금 1억 500만 원 중 9,84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음으로써 이득을 거두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범준, 판사 박치봉, 판사 서영애

1) 이 부분 자료 제출을 위하여 변론기일이 속행되었으나 원고들이 2021. 8. 25. 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변론이 종결되었고 이후 동일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석명준비명령 후 변론이 재개되었으나 이후 진행된 세 번의 변론기일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